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위드윈인베스트먼트

2. 조치일 : 2021. 11. 2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 4건, 개선 7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금 및 회계업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위드윈인베스트먼트의 내규「내부통제규정」제4조에 의하면 자금의 입·출금 및 회계업무의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정하고 있으나,

① 검사착수일 현재 전결권자의 자금집행 적정성 등 확인 없이 자금담당자 1인이 회사 및 계열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병행하면서 지출품의 및 자금이체 업무도 함께 수행함에 따라 계좌간 출금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지출 품의 및 자금이체 업무를 적정히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검사착수일 현재 회계처리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회계처리 오류 사례가 발생하였고, 별도의 로그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없어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회계처리 규정을 마련하여 회계처리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운영 관련 내부통제 강화

① 신규조합 결성시 출자조합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고유번호증을 미리 발급받거나, 투자철회된 미결성 조합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폐기하지 않고 신규조합 계좌개설시 전용한 사실이 있어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자조합원이 확정된 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조합결성이 무산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폐기하는 등 폐기대상 고유번호증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② ㈜위드윈인베스트먼트의 내규「투자심사세칙」제9조에 의하면 투자심사 담당자는 투자심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투자대상회사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입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자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20.1월 및 5월 각각 해외 소재 투자대상회사의 우선주 및 전환사채를 취득하기 위한 투자심사 과정에서 대상 회사의 실체 파악을 위해 재무제표를 입수하거나 현지실사를 수행하지 않고,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이 제출한 법인등록 서류 사본만으로 투자심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외투자를 할 경우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제표 분석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해외투자 사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투자업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① ㈜위드윈인베스트먼트의 내규「투자업무규정」제15조에 의하면 자금은 투자계약 체결이 완료되고 투자 선행조건이 충족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고,「투자관리세칙」제4조에 의하면 투자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 기업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형태별 '표준투자계약서'를 구비하여 이용하여야 하는데

검사 대상기간 중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금을 먼저 송금하거나, 투자계약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투자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투자금 집행시 투자계약 체결이 완료된 후 집행토록 하고, 투자계약 체결시 사전에 투자대상 자산에 부가된 제약조건을 명확히 파악하는 등 투자업무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위드윈인베스트먼트의 내규「투자관리세칙」제8조 등에 의하면 투자팀의 투자관리 담당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자금수지, 경영계획 등을 보고받아 분석 관리하고, 투자기업을 주기적으로 검토 후 회수방안 및 회수가능성을 평가하는 투자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검사착수일 현재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보고 항목 관리, 등급별 평가 및 회수 방안 검토 등 규정에 따른 투자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관리 소홀을 초래하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투자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투자관리 업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규에 따라 투자관리 업무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4) 법률자문계약 운영 기준 마련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법률자문계약 체결시 법률자문계약의 적정성, 적정 자문료 및 자문실적 점검 등에 대한 기준 없이 검사착수일 현재 법률자문료 관련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법률자문계약 체결의 필요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자문실적을 면밀히 점검하여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투명한 자금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⑴ 공동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관리 미흡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아닌 일반법인에 대해 공동업무집행조합원(Co-GP)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그 법인의 투자조합 운용 업력, 사업자등록 여부 및 재무상태 등에 별도의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계약서 및 업무협약서에 업무집행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역할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보수 분배내용만 정하고 있어 업무집행조합원 상호간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며,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성과보수 분배비율을 조합규약에 규정하고 그 필요성 및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지급한 사례가 있으므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아닌 일반법인을 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시킬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업력 및 재무상태 등을 검증하여 투자 전문성을 갖춘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계약서 및 업무협약서에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의 역할 및 상호간 책임을 명확히 하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보수기준을 정하는 등 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 인해 조합 운영이 부실화되어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의 보수 산정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⑵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의무 관리 미흡

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에 출자하고 그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증서를 받은 자로서 조합에 1좌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데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15개 조합에 대해 전혀 출자하지 않거나 다른 공동업무집행조합원에게 출자이행을 권하지 않는 등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 설립을 완료하여 조합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추후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 출자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등 내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3) 조합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 미흡

조합규약에 의하면 결성총회에서 조합의 회계감사인 선정을 결의하고, 조합원총회에서 회계감사인 선임, 변경 및 해임을 결의하여야 하는데,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조합원들과 별도 협의 없이 조합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조합의 투명한 회계처리 업무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회계감사인이 선임되지 않은 조합에 대해 회계감사인을 지정하고, 신규 조합 설립시 회계감사인 지정 안건을 결성총회에 의무 상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4) 조합재산 운용·관리업무 개선

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재산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조합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는데,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조합재산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회사가 조합재산을 직접 보관·운용함에 따라 조합원의 사전동의나 특별결의 없이 고유계정과 조합계정 간 임의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조합의 투자자금을 대여 또는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납한 사실이 있고, 출자금 오류 입금 및 반환이 발생하는 등 조합재산의 투명한 운용 및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합원 동의 없는 임의의 자금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조합재산을 구분 관리하고, 조합규약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운영시 이해상충방지 방안 마련 미흡

㈜위드윈인베스트먼트의 내규 및 조합규약에 의하면 ㈜위드윈인베스트먼트의

임직원, 투자대상 기업의 주주 및 임직원 등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거나 동일한 투자대상회사에 중복적으로 후행 투자하는 경우 각 투자조합의 조합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검사착수일 현재 이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원간 정보 불균형 및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내규 및 조합규약에 따라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6) 비상근 임원 보수 및 경비지출 등 지급기준 마련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경력, 업무량 등 보수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근 이사에게 매월 고정 급여, 법인차량 및 운전기사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근무시간, 실적 등을 반영하여 비상근임원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보수지급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업무실적 등 산정근거를 작성·보관하는 등 비상근임원의 보수 및 경비지출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7)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보수지급 및 평가 세부기준 미흡

검사착수일 현재 ㈜위드윈인베스트먼트의 「내부통제규정」에서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평가 및 보상체계에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